

#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2021. 12. 27 의회규칙 제2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정대리)** 이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기타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(이하 “과장”이라 한다)이 대리한다.
2.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.

**제3조(지정대리)**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.

**제4조(책임)**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### 직 무 대 리 명 령 서

- 1. 피대리자 직 성명 :
- 2. 대리자 직 성명 :
- 3. 대 리 기 간 :

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직 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